

수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761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9. 7.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2. 선고 2020가소3998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원 및 그중 1,8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3.부터, 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 C 계좌로 2018. 2. 3. 1,800,000원을, 2018. 2. 12. 9,500,000원 등 합계 11,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C을 피고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 2020. 4. 16.자 2020가소8060호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C의 법정대리인인 피고가 추완이의 신청을 하여 2020. 11. 26.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을 그즈음 확정되었다(이하 '전소'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2. 3.경 소외 D의 소개로 전화상으로 C을 사칭한 피고로부터 농사자금으로 쓰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C의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하였고, 며칠 후 피고로부터 재차 전화가 와 먼저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하여 9,5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C을 사칭한 피고가 변제 자력이 있는 줄 알고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고, 돈을 변제 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전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던 것인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후 추완이의의를 하면서 C은 미성년자로 이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C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한 것이어서 C에게는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는 전소 사건에서 패소하였다.

피고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원고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아들 C의 신분을 모용하여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 합계 11,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한 방법으로 돈을 빌린 사실도 없다.

D으로부터 누구에게 돈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본인도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아들 C의 계좌번호를 D에게 알려주었던 것일 뿐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전소에서 제출한 추완이의신청서 기재를 주요 증거로 주장하나,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D의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받기 위하여 C의 통장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자신이 C의 신분을 모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밖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2. 11. 원고로부터 C 계좌로 송금된 9,500,000원은 곧바로 D의 자녀인 E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또한 돈을 빌려간 사람은 D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정, 판사 정하정, 판사 진현지